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47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서미화·허성무·김예지

이수진 • 박정현 • 백혜련

정동영 · 송재봉 · 김우영

용혜인 • 이용선 • 김영환

권칠승·박홍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법률 제 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실태조사의"를 "실태조사 및 공표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 피해 현황 및 화재 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다음 각호에"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지원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 3. 소방용품의 제공
- 4. 전기 · 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 5. 화재 발생 시 대응 및 피난 요령 및 훈련의 제공
- 6.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제1항제5호 중 "예방과 안전관리"를 "예방과 화재안전취약자 등 안전관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u>
	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
	(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장은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
	취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그 실
	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
	<u>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④</u> 제1항 및 제2항에 <u>실</u>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u>태조사 및 공표의</u>
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	

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u><후단</u>

② ~ ④ (생 략)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 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신 설>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의
화재 피해 현황 및 화재안전취
약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u>다음 각 호에</u>
지원하여야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
비의 점검 및 개선
5. 화재 발생 시 대응 및 피난
요령 및 훈련의 제공
6.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
 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략)
-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 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 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 강화
 - 6. (생략)
 - ② ~ ④ (생 략)

정하는 사항
2
방법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1. ~ 4. (현행과 같음)
5예방과 화재안전취약
자 등 안전관리
<u>/ </u>
C (취계기 기수)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